

부산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가단3248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1. 22.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9. 1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9. 12. 26. 접수 제64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2/7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8. 3. 5. D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원고는 2020. 12. 23. 위 대출금 채권을 최종 양수받고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86223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10. 6. ‘D은 원고에게 4,738,7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다. 한편 D의 부친인 F가 2019. 9. 19.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D, G가 있었는데 피고는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9.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9. 12. 26. 접수 제645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위 협의분할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E 주식회사는 위 협의분할 전에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F가 사망함에 따라 D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9. 1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9. 12. 26. 접수 제64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2/7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정우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76.1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95.000분의 18.143

